

수원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3가단5030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현인혁, 박준현, 오민정, 황영근, 이예린, 김용희, 박정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용환, 이지민, 김나리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2024. 8. 23.

판 결 선 고 2024.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21. 8. 9.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1. 8. 9. 접수 제12616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1. 8. 9. 접수 제12616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8. 18.부터 2021. 6. 3.까지 주식회사 C(대표이사 B: 2019. 3. 21. 취임, 이하 'C'라고 한다)에게 수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자금대출을 하였고, B은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2023. 1. 11. 기준으로 B이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대출원리금 채무액은 합계 1,576,245,000원이다.

나. B의 재산 처분행위

1) B의 배우자인 D는 B이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직전인 2019. 3. 20. C의 종전 대표이사였던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19. 3. 21. 그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은 2019. 5. 24. 이 사건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과 D는 2020. 7. 2. F조합과 사이에, B이 F조합에 대해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대출원금 10억 원)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F조합,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3) E는 2021. 6. 28. 수원지방법원 2021카단503740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B 소유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80,790,00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4) B은 2021. 8.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소유인 1/10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300만 원(계약금 200만 원, 잔금 8,1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날 B에게 위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1. 8. 9. 접수 제126160호로 피고 명의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

5)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계약과 동시에 이전하기로 한다.○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발생 분은 매수인이 별도 부담한다.

○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8,100만 원은 2021. 8. 30. 지급하되,
매매잔금은 이 사건 가압류 말소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가압류 말소는 위 지정된
잔금일보다 늦어질 수 있다.

다. 그 밖의 정황

1) 식품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해 온 C의 종전 대표이사였던 E는 2019. 3. 21.경 B과 주식
양도 · 양수계약 및 경영권 양도 ·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C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경영에서 탈퇴하였고, 위 2019. 3. 21. B이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B은 C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받은 이후 2020. 1. 13. 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 법인을
설립하여 그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3) 피고의 본점 주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이다.

라. 관련 소송의 결과

1)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중 B 소유였던 1/10 지분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합5114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3나2037750 판결).

2) 그 밖에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모두 원고 청구 기각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가단536361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2나7024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나7625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G은행, H중앙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용인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원고에 대해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10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과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구입자금 출처와 구입 경위, 물상보증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8777 판결 참조).

다. 판단

-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이 1/10 지분, D가 9/10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B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B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10 지분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공제한 부분이다.
- 2) 그런데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B이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21. 8. 9.경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10억 원이고(2021. 10. 27.을 기준으로 위 피담보채권액은 9억 9,370만 원 상당임), 위 2021. 8. 9.에 근접한 2020. 7. 2.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B 소유인 1/10 지분의 가액은 135,474,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위 지분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B 소유인

위 1/10 지분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B이므로 피담보채권액이 안분되어야 한다거나 D가 B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 내용을 비롯하여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원고가 지적하는 몇몇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B이라거나, D가 B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등 참조),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 매매대금을 B이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B에게 매도하고 남은 9/10 지분은 D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② B과 D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D가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③ F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대출금의 채무자를 B으로 지정하였던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뿐더러,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은 법적으로 달리 취급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몇몇 정황만으로 D를 B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다.

④ 원고는, B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매각하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I은행, F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여 온 점 등을 지적한다. 그러나 B과 D가 부부 사이인 점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통상적인 물상보증인의 법적 지위와 책임, 채무자가 받은 대출금이 물상보증인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실질적으로 B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거나, D가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B 소유인 1/10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법인격남용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이 형식적인 외관만 갖추어 설립한 1인 회사이자 아무런 실체가 없는 명목상 법인으로서, B이 피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인격남용(부인)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B은 C와 본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명목상 법인으로 피고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역시 B이 책임재산을 은닉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매도인이자 매수인이 되어, 오로지 이 사건 부동산 중 B 소유 지분의 명의 변경만을 목적으로 거래의 외관만을 형성한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B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바이다.

2) 피고의 주장

C는 조제커피 사업을 오랜 기간 영위하였으나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매출이 감소하고 있었고, 이에 원두커피 사업으로 그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B은 C로부터 원두를 공급받아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영위하며 매출을 신장시키고자 피고를 설립하였다. 피고를 설립한 이후 프랜차이즈 조직구성을 하던 중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피고 법인의 사업 진행이 잠시 중단되긴 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에 이르러서는 다시금 C의 매출 증대를 위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더욱이 그 무렵 E는 C에 부담하는 채무액이 채권액 보다 많아 실질적인 채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B 소유 지분에 악의적으로 이 사건 가압류를 하였고, 이로 인해 C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으로 자금난에 시달려 운영자금 마련이 필요한 상태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서 B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 상 매매잔금은 이 사건 가압류 말소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E와 B 사이에 위 가압류 해제를 위한 협상이 지연되고 C의 운영자금이 필요함에 따라, 피고는 2021. 9.경부터 2022. 3.경까지 C 내지 그 거래처에 직접 돈을 입금하거나 C의 직원 급여, 전기료 등 각종 비용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B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일부를 선지급하였다(B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그 무렵 B 본인과 가족들의 개인 자금까지 C 운영자금으로 투입하였다.). 그런데 이후 C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중단되고 C가 파산하게 됨에 따라 피고의 매매대금 선지급 역시 중단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하게 설립된 실체가 있는 법인이고, B이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법인격남용(부인)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B이 C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한 시점, 피고 법인의 설립 시점과 설립 경위, C와 피고 법인의 목적,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와 체결 시점,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문언 내용, 위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전후한 무렵의 제반 정황, C의 재무상태, C와 피고 사이에 오간 전반적인 금융거래내역, 2022.

1.부터 2022. 12.까지 피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당사자들의 관계, 거래관행과 경험칙 등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6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원고가 지적하는 몇몇 단편적인 사정만으로는 B이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피고를 설립하여 그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거나, 피고의 법인격이 형해화되는 등으로 B의 도구에 불과하였다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51626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1039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가 2021. 9.경부터 2022. 3.경까지 C에

일정 금원을 이체하였다가 2022. 1.경부터 2022. 6.경까지 C로부터 그 이상의 돈을 이체받았다는 점을 통정허위표시의 근거 중 하나로 지적한다. 그러나 C가 2022. 1. 이후 피고에게 이체한 돈의 대부분은 C가 당초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 아니라, J, K, L 등 제3자로부터 입금된 자금을 당일 그대로 피고에게 이체한 것인바, 이들 상호 간에 법률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종전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잔금 지급과 이 사건 가압류 말소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이 사건 가압류가 말소되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이상¹⁾, 피고가 위 선지급한 매매대금을 C로부터 다시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약정 내용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사자들이 매매대금 지급을 가장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가 C에 지급한 돈 이상을 C로부터 반환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희승

별지

1) 이 사건 가압류는 현재까지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이다.